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5년 경북연구원 —

2025. 4.



□ 처분요구 일람표

1. 물품 관련 규정·규칙 미준수 (시정)	1
2. 제규정 등 정비 소홀 (시정)	4
3. 신용카드 관리업무 미흡 (시정)	8
4. 인사관련 규정 등 개정 미이행 (시정)	11
5. 협상에 의한 계약 부적정 (주의)	15
6.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18
7. 위탁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20
8. 일반회계 예산편성 부적정 (주의)	24
9. 예산안 및 결산안 이사회 심의·의결 부적정 (주의)	28
10.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시정)	30
11. 차입금 계좌 개설 부적정 (시정)	33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물품 관련 규정·규칙 미준수
소 관 청 경북연구원
관 계 부 서 ○○○○실
내 용

경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재무회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물품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리 등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을 관리하고 있다.

연구원 규정 제69조 및 제84조에 따르면 물품관리관은 기획경영실장이며 분임물품관리관은 기획경영실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물품출납원은 비품출납부, 도서대장, 소모품대장을 별지서식에 의거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물품관리는 기획경영실에서 주관하고, 주관부서의 장(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관리의 책임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필요한 물품의 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예산에 반영하고, 물품의 취득과 사용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조 및 제9조에 따르면 물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 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고 물품이 비품인 경우에는 대장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분임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물품의 수급·취득·사용처분에 관한 계획수립 및 2년마다 정기재물조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출납원은 비품의 출납 및 도서·소모품의 관리를 위해 재무회계규정 별지 [제35호 서식] 비품출납부와 [제36호·제37호] 도서·소모품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규정 제69조에 따른 분임물품관리관 지정을 하지 않았고, 규칙 제5조에 따른 물품의 수급계획 작성과 물품의 취득과 사용처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정기재물조사도 2025. 3. 21. 감사일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물품출납원(부서별 서무 담당자)은 규정 제84조에 따라 재무회계규정의 [제35호 서식] 비품출납부, [제36호 서식] 도서대장, [제37호 서식] 소모품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지도 않았다.

또한 [붙임]과 같이 2022 ~ 2024년 자산취득비로 총 50건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다수의 품목이 비품에 해당하여, 규칙 제6조에 의거 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그 결과 비품 등 물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북연구원장은

「물품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을 지정하시고, 매 회계연도마다 물품 수급계획 수립하여, 비품 등 출납부 및 도서·소모품대장을 정리하는 등 물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붙임]

자산취득비 물품 구입 현황

- 구입내역 비공개 처리 -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체규정 등 정비 소홀
소 관 청 경북연구원
관 계 부 서 ○○○○실
내 용

경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행정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집행하고 있다.

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 기준 미정비

연구원에서는 2021. 10월부터 2025. 1월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하였다.

[표 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 현황

(단위 : 원)

지급년월	지급현황				비고
	직위	성명	지급단가 (1개월)	금액	
2021년 10~12월	□□□	○○○	800,000	2,400,000	
	□□□	○○○	600,000	1,800,000	
	□□□	○○○	500,000	1,500,000	
2022년	□□□	○○○	800,000	4,240,000	
	□□□	○○○	600,000	7,540,000	
	□□□	○○○	500,000	6,000,000	
2023년	□□□	○○○	800,000	7,200,000	
	□□□	○○○	600,000	154,840	
		○○○		6,600,000	
	□□□	○○○	500,000	3,000,000	
○○○		3,000,000			
2024년	□□□	○○○	800,000	9,600,000	

지급년월	지급현황				비고
	직위	성명	지급단가 (1개월)	금액	
	□□□	○○○	600,000	3,600,000	
	□□□	○○○	500,000	1,500,000	
	□□□	○○○	600,000	7,200,000	
	□□□	○○○	600,000	7,200,000	
	□□□	○○○	600,000	7,200,000	
2025년 1월	□□□	○○○	800,000	800,000	
	□□□	○○○	600,000	600,000	
	□□□	○○○	600,000	600,000	
	□□□	○○○	600,000	600,000	
	□□□	○○○	500,000	500,000	

연구원 「재무회계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연구원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연구원 「보수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원장과 직책을 가진 직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21년 경상북도에서는 연구원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와 관련한 「보수규정」 제26조 외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고 타당한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주의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 등에게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구체적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2025. 3. 21. 감사일 현재까지도 「재무회계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 등을 통한 자체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 등 5개 직책을 대상으로 월 500천 원에서 800천 원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지급되었다.

2. 여비지급규칙 정비 소홀

연구원 「규정제정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지침”은 규정, 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규정 및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업무의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경미한 직무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및 규칙의 해석에 관한 설명적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유권적 해석 또는 처리절차의 보완을 내용으로 원장이 제정·개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르면 국내·외 여비는 설립자치단체 공무원 여비조례, 「공무원 여비규정」 등을 준용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지급규칙을 마련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여비지급규칙」 제9조를 개정하지 않고 국내출장 여비는 [별표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1]의 국내출장 여비 지급기준에 자동차임은 ‘정액’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별표1] 제6호에 따르면 이동거리에 따라 아래 [표 2]와 같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경상북도 내의 출장여비는 아래 [표 3]과 같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표 2] 이동거리에 따른 출장비 지급 기준

이동거리(편도)	출장비	비 고
2km 이내	10,000원	교통실비(유류비)
2~7km 이내	15,000원	교통실비(유류비)
7~15km 이내	18,000원	교통실비(유류비)
15~50km 이내	정액	교통실비(유류비+고속도로비) + 15,000원 (5천원 단위 반올림)
50km 이상	정액	교통실비(유류비+고속도로비)×130% + 15,000원 (5천원 단위 반올림)

※ 연구원 출장비 지급 기준 발췌

[표 2] 경상북도 내 출장비 조건표

경상북도 내 출장비 조건표							
(단위 : 원)							
울진군	영양군	봉화군	영주시	영덕군	청송군	예천군	문경시
135,000	110,000	110,000	100,000	95,000	90,000	90,000	90,000
안동시	상주시	포항시	김천시	의성군	경주시	군위군	구미시
85,000	80,000	75,000	70,000	70,000	65,000	55,000	50,000
영천시	고령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	달성군	상서-계태	경산시
40,000	40,000	40,000	40,000	35,000	30,000	25,000	25,000

※ 연구원 출장비 지급 기준 발췌

그 결과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정비되어야 할 여비 규정을 제대로 제·개정 하지 않은 채 2023. 1. 9. 작성된 「출장 증빙 및 여비지급 지침(안)」을 기준으로 출장 여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북연구원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등을 준용하여 「여비지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신용카드 관리업무 미흡
소 관 청 경북연구원
관 계 부 서 ○○○○실
내 용

경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 및 관리하고 있다.

연구원 「재무회계규정」 제2조 및 제64조에 따르면 연구원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무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등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직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 직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신용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고, 신용카드 보관 직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후임 직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뜻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기명날인 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2025. 3. 21. 감사일 현재 [붙임]과 같이 총 116장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발급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지 않고 있고,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2회(2023. 2월, 9월)에 걸쳐 신용카드 보관 직원이 교체되었는데도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기명날인 한 서면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아래 [표]와 같이 2022. 6월 신용카드 포인트 발생액 170,780원을 세입조치한 후로는 발생한 포인트¹⁾ 1,452,286점을 세입조치 하지 않고 있었다.

[표] 신용카드 포인트 발생 및 세입조치 내역

(단위 : 점)

구분	발급카드수량	사용용도	포인트 현황			세입조치여부
			발생	소멸	잔여	
합계			1,623,074	170,788	1,452,286	
2022	파악불가	기관운영 경비지출	430,538	170,788	259,750	623. 170,780원 세입조치
2023	파악불가	기관운영 경비지출	465,632	0	465,632	부
2024	116	기관운영 경비지출	626,416	0	626,416	부
2025.3.	116	기관운영 경비지출	100,488	0	100,488	부

그 결과 발급받은 신용카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신용카드 포인트 1,452,286원이 세입조치 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북연구원장은

신용카드 대장을 작성하여 신용카드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세입조치 되지 않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1,452,286원은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1) 신용카드 포인트 1점은 1원으로 환산됨

[붙임]

신용카드 발급 및 대장작성 현황

- 비공개 처리 -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인사관련 규정 등 개정 미이행
소 관 청 경북연구원
관 계 부 서 ○○○○실
내 용

경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정관」을 포함하여 자체규정 및 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임직원의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인사관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통보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IV. 투명한 윤리경영 2. 징계 등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 그에 따른 임금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에서는 ①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고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하며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누우치게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²⁾에 따르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정직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의 징계 처분 실효성 강화 (2022. 5. 30.의결)」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고 직무에서 배제된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징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기간 중 출근, 직무부여 및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강등, 정직 징계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 양정이 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 규정 등에 해당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붙임 1]과 같이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3분의 2를 감하고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는 등으로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기준보다 완화된 「인사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2)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105(2011.09.30.)에 따르면 정직은 통상적으로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음

또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이 2023. 12. 12. 개정되었는데도 [붙임 2]와 같이 음주운전 징계 양정기준 14개 유형 중 12개 유형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북연구원장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등·정직 시 보수 기준 및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붙임 1]

징계(강등,정직)의 효력기준 비교

징계종류	지방공무원법		경북연구원 인사규정		비고
	직무제한	보수	직무제한	보수	
강등	3개월간	전액삭감	3개월간	3분의2 삭감	
정직	1월~3월	전액삭감	1월~3월	2분의1 삭감	

[붙임 2]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 비교

유 형 별	행안부지침 (지방공무원징계규칙) 징계기준	연구원 징계기준	비고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감봉	감봉~견책	불일치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정직	정직~감봉	불일치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정직	정직~감봉	불일치
라.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정직	정직~감봉	불일치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해임~정직	불일치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파면~해임	일치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정직	정직~감봉	불일치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해임~정직	불일치
6.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정직	중상해: 해임~정직 경상해: 정직~감봉	불일치
나.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해임	해임~강등	불일치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정직	파면~정직	불일치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해임		불일치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파면~해임	일치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정직	강등~정직	불일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연구원
관 계 부 서 ○○○○실
내 용

경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재무회계 규정」 제6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관련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별 평가 결과’의 ‘평가위원 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용역 등’ 총 13건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연구원의 정보처리장치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

[표 1]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용역 현황
- 계약 내용 비공개 -

그 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투명성이 훼손되었다.

2.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한도 초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80호, 2021. 9. 30.) 제5장 제3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 기준을 정할 수 있고,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에 따르면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정량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를 준수하여 평가항목별 배점이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용역'의 정량평가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수행실적 항목'을 정량적 평가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6점)을 초과한 7점으로 부여하였다.

[표 2] 제안서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한도 미준수 내역

(단위 : 점)

부서명	사업(계약)명	정량평가 배점한도	평가항목별 배 점	평가항목	비고
○○○	□□□□용역	20	7(35%)	▪ 수행실적	배점한도 초과
			5(25%)	▪ 전문인력보유상태	
			6(30%)	▪ 경영상태	
			2(10%)	▪ 신인도	

그 결과 평가 항목 간 균형을 유지하고 제안서 평가 업체의 변별력 강화를 통한 협상대상자 선정의 취지가 훼손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북연구원장은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연구원
관 계 부 서 ○○○○실
내 용

경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재무회계 규정」 제64조에 따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하여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 중 소기업³⁾ 또는 소상공인⁴⁾과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⁵⁾를 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계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4)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약,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계약 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른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소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규정을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사유로 착오하여 아래 [표]와 같이 ‘□□□□기술부분 용역’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2인 이상의 견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특정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용역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용역명	계약업체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방법	비고
□□□□ 기술부분 용역	AAA	2024.5.23.	35,420	1인 수의계약	소기업

그 결과 다수의 업체가 수의견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다수의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잃어 버리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북연구원장은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의계약 등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계약을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위탁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연구원
관 계 부 서 ○○○○실, ○○○○실
내 용

경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실 및 ○○○○실에서는 아래 [표] 와 같이 ‘2023 경상북도 □□□□운영’ 등 3개 사업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교부받아 관련행사를 추진하였다.

[표] 위탁 사업 행사 현황

(단위 : 천원)

위탁사업명	행사명	행사일자	행사비집행내역	집행처	집행금액
2023 경상북도 □□ □□ 운영	2023 경상북도 □□ □□ ○○	23.11.20.	○○ 행사운영비 지급	AAA	11,750
경상북도 □□□□ 포럼	경북 □□□□ 행사	23.12.21.	경북 □□□□ 용역	BBB	10,000
2024 경북 □□□□	□□□□ 선포식	24.02.20.	2024 경북 □□□□행사 기획 및 추진 용역	CCC	14,641
			2024 경북 □□□□ 행사물품 제작 용역	DDD	16,605

연구원 「재무회계 규정」 제64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무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위탁사업비 변경 신청 미실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2024. 7. 30.)에 따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2024. 9. 20.)에 따르면 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⁶⁾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⁷⁾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2024. 1. 1.)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자금집행 계획과 사업비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경상북도에서 교부한 위탁사업 교부조건에도 수탁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위탁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사업 안 내역 사업변경 포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2023 경상북도○○○○○ 총회 등 관련행사 3건 행사 대항용역비를 집행하면서 위탁부서의 위탁사업비 변경 승인을 통해 사업비항목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지 않고, 기존 사업비내 회의비 항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6)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타공공기관(국립대학병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7)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써,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2. 용역 분리 발주 부적정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I-⑨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및 II-④ 사업비에는 출자·출연 기관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용역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에 따르면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용역 사업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을 제출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용역사업 추진을 위한 발주를 할 때에는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 분리발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일 사업은 통합 발주하여야 하고,

발주하려는 단일 사업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용역 사

업일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을 제출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2024 경북 ○○○○ 관련 □□□□ 선포식 행사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수행하는 단일 사업이고, 산출기초서와 같이 과업성격상 각각 분리하여 수의계약할 필요가 없는데도 □□□□ 선포식 행사 기획 및 추진 용역(14,641천 원)⁸⁾과 □□□□ 선포식 행사물품 제작 용역(16,605천 원)⁹⁾으로 분할하여 업종이 유사한 두 업체와 2024. 2. 16. 각각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그 결과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의 낙찰율을 감안하면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경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기업들의 참가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연구원장은

앞으로 위탁사업비 변경 신청 및 위탁사업 집행 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8) 계약체결: 2024.2.16., 1인견적 수의, CCC(업종: 공연기획대행, 광고물제작인쇄)

9) 계약체결: 2024.2.16., 1인견적 수의, DDD(업종: 행사대행업, 홍보판촉물)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일반회계 예산편성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연구원
관 계 부 서 ○○○○실
내 용

경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아래 [표 1]과 같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회계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1] 연구원 일반회계 자금운영계획(2021년 ~ 2024년)

(단위 : 천원)

연도	계	수입				지출				
		출연금	용역수입	영업외수익	순세계잉여금	인건비	연구사업비	경상경비	예비비	자산취득비
2021	12,802,740	8,600,000	2,300,000	243,706	1,659,034	8,174,205	2,412,209	2,111,326	58,000	47,000
2022	13,078,144	8,600,000	1,950,000	1,178,656	1,349,488	9,099,478	559,960	3,284,450	58,000	76,256
2023	9,544,524	6,750,000	1,030,000	318,599	1,445,925	5,838,760	628,530	2,502,009	393,099	182,126
2024	9,713,764	6,150,000	2,622,946	685,919	254,899	6,254,897	523,850	2,651,181	238,836	45,000

※ 경북연구원 예산서 재구성

1. 불용액 과다 발생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편성의 원칙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출경비를 산정하고, 관련 자료에 의거 정확하게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출예산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편성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과도한 예산 불용 및 이월을 방지하여야 하고, 특히 인건비, 경상경비 등은 과거 불용요인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예산은 편성을 지양하는 등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연구원의 일반회계 예산 및 결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매년 예산 불용액이 증가¹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 연구원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 결과(2021년 ~ 2024년)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A)	채무확정액 (B)	불용액						현액 대비 불용율 (C/A)*100
			계 (C=B-A)	인건비	연구사업비	경상경비	예비비	자산취득비	
2021	12,802,740	12,147,638	655,101	307,599	152,552	136,744	58,000	206	5.11%
2022	13,078,144	12,355,571	722,572	561,385	-14,934	118,119	58,000	2	5.52%
2023	9,544,524	8,642,744	901,779	395,955	105,827	187,729	208,083	4,185	9.44%
2024	9,713,764	8,310,051	1,403,712	982,662	-34,760	309,908	137,359	8,542	14.45%

※ 경북연구원 예산서 및 결산서 재구성

2. 인건비 및 봉급(목적)예비비 편성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르면 다음연도 총인건비 예산은 당해연도 말 정규직(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현원대비 결원율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현원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당해연도 신규채용의 경우와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

10) 연도별 예산불용율 ('21) 5.11% → ('22) 5.52% → ('23) 9.44% → ('24) 14.45%

(정원대비 5% 이내)는 봉급(목적)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결원율이 정원대비 5%를 초과할 경우 조직진단을 통한 정원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구원 「직원 채용 규칙」에 따르면 원장은 신규 채용이 필요한 경우 원장은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모집 분야 등을 명기한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연말 기준 정규직 정원과 현원을 고려하여 인건비는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봉급(목적)예비비로는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정원대비 5% 이내)와 연구원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당해 연도 또는 다음 연도 연구원 정규직 공개채용 계획에 따른 채용 예정 인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건비와 봉급(목적)예비비를 편성하면서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인원 산정이 적정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

[표 3] 본예산 기준 인건비 및 봉급(목적)예비비 편성 내역(2022년 ~ 2025년)

(단위 : 명)

편성연도	인건비					봉급(목적)예비비			
	정원	현원	연구원 편성 (A)	규정상 편성 (B)	부적정 편성 (C=A-B)	연구원 편성 (D)	정규직 채용계획 (E)	작성인원 (F)	부적정 편성 (G=D-F)
2022년	85	82	83	82	1	-	5	6	△6
2023년	85	76	76	76	-	-	22	23	△23
2024년	85	51	58	51	7	4	11	13	△9
2025년	85	57	60	57	3	12	6	8	4

그 결과 위 '1'과 '2'를 종합해 보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연구원 전체 수입의 매년 60% 이상을 차지('21년 67.17%, '22년 65.76%, '23년 70.72%, '24년 63.31%)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출 과목은 인건비가 60% 이상을 차지('21년 63.85%, '22년 69.58%, '23년 61.17%, '24년 64.39%)하고 있어, 사실상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인건비 불용액이 '21년 46.95%, '22년 77.69%, '23년 43.90%, '24년 70.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예산 편성을 위한 정확한 추계 및 산출근거 마련 등 예산 불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조치할 사항 경북연구원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한 산출근거 마련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불용 등으로 필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안 및 결산안 이사회 심의 의결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연구원
관 계 부 서	○○○○실
내 용	

경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무회계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연구원 「재무회계규정」 제13조 및 제14조, 제29조에 따르면 예산안 및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수입과 지출을 총정리하여 이사회에 결산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구원 「정관」 제21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하고 있고, 안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이사가 출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안 의결,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추가적

인 필요가 발생했을 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결산을 위한 이사회(총 10회)를 서면회의로 개최하였다.

[표]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 시 서면 이사회 개최 내역

연도	심의 안건	개최 방법	회의명(개최일자)
202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면	2021년 ○○○ 임시 이사회(****.**.**)
	2022년 본예산(안)	서면	2021년 ○○○ 정기 이사회(****.**.**)
2022	2021회계년도 사업결산(안)	서면	2022년 ○○○ 임시 이사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면	2022년 ○○○ 임시 이사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면	2022년 ○○○ 임시 이사회(****.**.**)
2023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면	2023년 ○○○ 임시 이사회(****.**.**)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면	2023년 ○○○ 임시 이사회(****.**.**)
2024	2023회계년도 사업결산(안)	서면	2024년 ○○○ 임시 이사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면	2024년 ○○○ 정기 이사회(****.**.**)
	2025년 본예산(안)	서면	2024년 ○○○ 정기 이사회(****.**.**)

그 결과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 심의를 위한 이사회가 「정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결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북연구원장은

앞으로 「정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및 결산 심의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연구원
관 계 부 서 ○○○○실
내 용

경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보조금 반납액,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연구원 「재무회계규정」 제2조에 따르면 연구원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64조에 따르면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무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등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세입세출외 현금은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으로 그 출납이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는 현금 출처 불분명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2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훈령 제9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 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 날 해당 관서 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금고로부터 제출받아 일일 출납상황을 점검하는 등으로 세입세출외현금을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연구원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상황을 점검한 결과 2025. 3. 17. 감사일 현재 세입세출외현금 계좌¹¹⁾에 보관하고 있는 6,285,026원의 출처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파악되었다.

그 결과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미흡으로 재정 운영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회계오류 및 부정 사용의 우려가 있다.

2. 세입세출외현금 이자 세입처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에 따르면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과 그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하여 귀속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징수관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 징수관은 이를 조사한 후 납입고지서를 출납원에게 송부하여 해당 출납원이 금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11) ○○뱅크 ***_**_*****_*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자포함)의 원인을 분명히 하여 귀속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금고를 통해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

[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내역(2022년 ~ 2024년)

(단위 : 원)

발생일자	종류	금액	비고
계		19,121	
2024.12.29.	예금이자	1,792	
2024. 9.29.	예금이자	1,449	
2024. 6.23.	예금이자	1,650	
2024. 3.24.	예금이자	1,576	
2023.12.24.	예금이자	1,560	
2023. 9.24.	예금이자	1,143	
2023. 6.25.	예금이자	1,360	
2023. 3.26.	예금이자	1,433	
2022.12.25.	예금이자	1,895	
2022. 9.25.	예금이자	1,650	
2022. 6.26.	예금이자	1,686	
2022. 3.27.	예금이자	1,927	

그 결과 세입으로 처리되어야 할 이자 19,121원이 세입으로 처리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방치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북연구원장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 중인 잔액(6,285,026원)의 내용을 분명히 하여 세입·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세입세출외현금 발생 이자(19,121원)는 세입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차입금 계좌 개설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연구원
관 계 부 서 ○○○○실
내 용

경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연구원 기본재산을 담보로 거래 은행(○○○ ***-*****)으로부터 차입금 계좌(이하 ‘마이너스통장¹²⁾’)를 개설하여 단기차입하고 있다.

연구원 「재무회계규정」 제3조 및 「용역사업규정」 제7조에 따르면 연구원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수탁용역사업수입은 별도 계정으로 설치·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재무회계규정」 제64조에 따르면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무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등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여비(旅費),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先金給)이나 개산급(概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12) 2021. 12. 30. 10억 원 한도로 개설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수탁용역사업 수행을 포함한 모든 세입 및 세출은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수탁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출액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을 신청하여 사용하거나 연구원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수탁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은 특별회계로 편성하면서 자금 차입에 대한 사항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운영비를 마이너스통장에서 차입하여 각 용역사업 계좌로 입금한 후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하고, 선금급이 지급되거나 용역이 완료되어 용역 대금이 입금되면 마이너스통장에 발생했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였다.

감사기간 중 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304회에 걸쳐 3,024,866,183원을 차입하였고, 이자 45,843,204원을 지출하였으며, 2024. 12월말 현재 마이너스 통장에 상환하지 않은 차입금액(이자포함, △53,562,781원)이 남아 있었다.

[표] 마이너스통장 잔액 내역(2024. 12월말 현재)

(단위 : 원)

차입일	용역사업명	금액	비고
	7개 사업	53,562,781	
2024. 5.22.	-	8,520,000	
2024.10. 8.	-	7,700,000	
2024.10.23.	-	3,000,000	
2024.10.25.	-	3,500,000	
2024.10.31.	-	7,800,000	
2024.11. 5.	-	8,800,000	
2024.12. 3.	-	9,600,000	
-	이자	4,642,781	

그 결과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되게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여 세출예산이 지출되었고, 선급금을 신청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될 이자가 발생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연구원장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입금 계좌(마이너스통장)는 해지 하시고,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편성 및 운영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